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4., 2013. 3. 23.>

1. 공동운수협정의 변경사유서
2. 신·구 공동운수협정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3. 당해 철도사업자간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0조(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신청 등)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양도인 및 양수인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철도사업 양도·양수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설립예정 법인인 경우를 제외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7., 2008. 3. 14., 2008. 6. 25., 2011. 4. 11., 2013. 3. 23.>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양도·양수 후 당해 운영구간에 대한 사업계획서
 3. 양수인이 법 제7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4. 법인설립계획서(설립예정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5.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법인의 합병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합병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합병 당사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6. 8. 7., 2008. 3. 14., 2008. 6. 25., 2011. 4. 11., 2013. 3. 23., 2016. 6. 30.>
1. 합병의 방법과 조건에 관한 서류
 2. 당사자가 신청당시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3.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4. 합병계약서 사본
 5. 삭제 <2006. 8. 7.>
 6.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제11조(사업의 휴업·폐업) ① 철도사업자는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철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받으려면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3개월 전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철도사업휴업(폐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2.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철도노선, 정거장, 열차의 종별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3. 철도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 대체 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철도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철도사업자가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철도사업의 휴업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휴업사유가 발생한 즉시 별지 제13호서식의 철도사업휴업신고서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2. 10.]

제12조(면허취소 등 처분기준과 절차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6. 6. 30.]

제13조(과징금운용계획 수립·시행)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